

세무회계업무 변경계약서

2024. 03. 26.

“갑” : 안양석수2지구 B지역주택조합

“을” : 한성세무법인

세무회계업무 계약서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안양시 석수동 101-1번지 일대 안양석수B지역주택조합에 관하여 “갑(안양석수B 지역주택조합)”과 “을(한성세무법인)”의 지위,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지역주택조합의 세무회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의 범위]

“갑”은 “을”에게 다음의 세무회계 업무를 위임한다.

1. 기장대리업무

- ①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
- ② 매년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신청.
- ③ 조합 임직원 매월 근로소득 원천신고 및 연말정산.
- ④ 조합사업의 회계장부 기장.
- ⑤ 분기별 매입세액 안분계산 확정정산.
- ⑥ 일반분양에 따른 작업진행률 계산.
- ⑦ 조합원, 일반분양 구분계산서 작성.
- ⑧ 해당사업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신고 상담업무(수시신고)

2. 연도별 결산보고 작성업무.

- ① 임원, 대의원, 조합원총회 결산 및 보고.
- ② 외부회계감사 관련 결산
(주택법 제34조에 의한 외부회계감사업무의 자료준비 및 대행)

3. 연도별 법인세신고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

- ① 조합에 대한 연도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및 신고.
- ② 조합사업의 세무조사 입회, 진술, 소명.
- ③ 조합과 관련된 조합 및 조합원의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록세 등 상담
- ④ 조합 해산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세무문제 사후관리
단, 불복(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행정소송)청구는 제외함.

4. 세무관련 기타업무

- 해당사업에 대한 세무회계 자문 및 상담업무(조합원포함)와 증빙처리업무, 경영지도 업무
- 단, 지방세 관련업무는 제외함.

제 3 조 [계약 및 업무처리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 및 업무처리기간은 계약일 부터 청산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보수의 지급]

“갑”은 각종 세무·회계업무의 위임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지급내역서(별첨1)에 의거 보수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5 조 [계약에 따른 의무]

“갑”은 본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제반서류 등을 신속정확하게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의거 “갑” 및 “갑”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6 조 [비밀의 보장]

“을”이 세무회계업무를 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비밀을 유지하고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 7 조 [권리의무 양도 및 하도급 금지]

“을”은 “갑”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명기된 당해 업무 및 권리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 및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8 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을”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처분, 어음, 수표의 부도, 제3자의 의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회사정리신청, 파산선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3.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을”이 “갑”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또는 위임한 경우
5. “을”이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② “을”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 중단되어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경우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시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제 또는 해지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보수의 정산 및 손해배상]

① “갑”과 “을”은 제8조 ①항 1호 내지 4호 ②항에 의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하는 경우 “을”의 기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를 정산하여 “갑”에게 반환하거나 “을”에게 지급하여 한다.

② “을”은 제8조 ①항 5호에 의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하는 경우 “갑”에게 수령한 보수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계약의 효력]

“갑”의 조합설립인가 후 명칭, 조합장, 임원 및 조합원변경 등으로 본 계약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갱신 없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 11 조 [기 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기타 일반 상 관례에 따르기로 하며, 분쟁의 조정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경우 법원에 소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재판에 대한 관할법원은 본 사업부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 12 조 [특약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 및 관련업무 법률개정에 따른 업무에 대한 보수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024년 03월 26일

“갑”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90번길 17, 101호 (석수동, 이안상가)

법 인 명 : 안양석수B지역 주택조합

조 합 장 : 최 양 례



“을”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75 서초현대타워오피스텔 909호

법 인 명 : 한성세무법인

대 표 : 문 갑 철



(별첨1)

보 수 지 급 내 역 서

안양석수2지구 B지역주택조합(“갑”)과 한성세무법인(“을”)은 “갑”의 조합주택 건축사업에 관한 세무회계 업무의 위·수임계약에 따른 보수 및 지급시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약정하기로 한다.

◀ 아 래 ▶

1. 총 계약금액 : 일금 칠천육백구십오만원 (₩76,950,000)으로 한다. (VAT별도)

가. 건축 세대수 335세대 × 세대당 170,000원 = 56,950,000

- 건축세대수에 따른 보수금액은 제2조(업무의범위)에 따른 연도별 결산보고, 법인세신고 세무조정계산서 (2호,3호)에 따른 보수를 말한다.

나. 사업중단기간 (약4년) 세무관련 자문료 : 20,000,000

다. 지급시기는 기 지급한 금액 11,000,000원을 제외한 65,950,000원에 대하여 다음 각각의 시기에 지급한다.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24.03.31	10,000,000	26.09.30	5,000,000
24.09.30	5,000,000	27.03.31	10,000,000
25.03.31	10,000,000	27.09.30	5,000,000
25.09.30	5,000,000	조합청산시	5,950,000
26.03.31	10,000,000	합 계	65,950,000

* 대금의 지급시기는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상호협의 하여 결정할수 있다.

2. 기장대리업무(제2조1호)에 따른 월 기장료는 매월 금 오십만원(₩ 500,000)을 24.04월부터 당 조합의 청산시 까지 매월 25 일에 지급한다.